음주단속경찰관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음주단속경찰관 자동차보험 약관

음주단속경찰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배상책임

제1조(보상내용)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피보험자동차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는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대인배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보험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상기의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보험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⑥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승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차량소유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동차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는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통상의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①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 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② 경찰관서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③ 경찰관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사람

(3)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② 경찰관서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③ 경찰관서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사람

제3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는 "경찰청"으로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가 그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 교통경찰관(모범택시운전사 등 교통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과 의무경찰은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추정되어 차량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운전자가 그 단속 시점에 단속 장소에서 운전하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5조(합의 및 소송의 절차)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부담하기로 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도와 드릴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동의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 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7조(법률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2) 대물배상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제9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단속 등 공무수행중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5) 회사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기타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탁금의 대부)

(1)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대행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1)의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2편 자기신체사고

제13조(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피보험자동차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는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지진, 분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⑦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⑧ 피보험자동차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는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 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통상의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15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 도난 시 운전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는 "경찰청"으로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가 그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 교통경찰관
(모범택시운전사 등 교통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과 의무경찰은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제16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추정되어 차량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운전자가 그 단속 시점에 단속 장소에서 운전하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1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1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나. 후유장애구분 및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1)'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4>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별표3>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i)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ii)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i)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ii)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라. 다만, '다'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

(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애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사고당시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단속 등 공무수행중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3)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편 피보험차량손해

제20조(보상내용)

회사는 다음의 경우(*1)에 대하여, 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생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2)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4)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피보험자동차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 하는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ㄴ. 피보험자동차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는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되어 주차중인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를 말합니다.

(*3)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4)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2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9)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2) 자동차의 제작상,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13)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4) 피보험자동차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는 지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소속경찰서, 견인차량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15)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경찰관서, 경찰관 또는 경찰관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손해

제22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는 "경찰청"으로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가 그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 교통경찰관
(모범택시운전사 등 교통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과 의무경찰은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제2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교통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추정되어 차량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운전자가 그 단속 시점에 단속 장소에서 운전하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24조(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2)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1)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4) 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소요된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제25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6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보험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보험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매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7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단속 등 공무수행 중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경찰서, 견인차량 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중이었음을 확인하는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5)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4)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6) 회사는 위 (4) 또는 (5)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9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0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1) 회사가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 용어풀이 >

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1조(현물보상)

회사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32조(보험계약의 성립)

(1)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①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①서면교부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 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3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청약 철회)

(1)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③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1) '일반금융소비자' 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 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4)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 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5)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6)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제37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38조(계약 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회사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 (1)에 위반한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맺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②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또는 특별약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③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실에 대하여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0조(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1조(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 약관 제3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 약관 제39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위 (1)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위 (2)에 의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2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보험료의 환급 등)

(1)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2)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3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41조의 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③보험계약이 해지(제41조의 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②보험회사가 제41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5)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6)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7)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3조(사고의 발생)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곧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

1. 사고발생의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2.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3.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4.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또는 걸어온 때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곧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4조(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5조(약관의 해석)

(1)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6조(보험계약정보의 제공)

(1) 보험회사는 제43조(사고의 발생) 제1항 제2호 2목, 3목의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③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7조(대위)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 위 (1) 또는 (2)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0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1조(분쟁의 조정)

(1)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2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22.12.31 이전 사고	'23.1.1 이후 사고		'22.12.31 이전 사고	'23.1.1 이후 사고
1급	1,500만원	1,500만원	8급	180만원	180만원
2급	800만원	800만원	9급	140만원	140만원
3급	750만원	750만원	10급	120만원	120만원
4급	700만원	700만원	11급	100만원	120만원
5급	500만원	500만원	12급	60만원	120만원
6급	400만원	400만원	13급	40만원	80만원
7급	250만원	250만원	14급	20만원	5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표에 의함

음주단속경찰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절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

제54조(보험료의 분할납입)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5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4) 서면으로 안내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33.계약 후 알릴 의무 (4)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5) 회사가 (3)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56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54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제57조(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제54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대인배상Ⅰ지원금 특별약관

제59조(보상내용)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의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2) 상기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금액을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 드립니다.

제60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1편 배상책임의 제3조(피보험자)와 같습니다.

제61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책임보험의 금액으로 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

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제6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절 차량손해 차대차충돌 한정 담보 특별약관

제64조(보상내용)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3편 피보험차량손해의 제20조(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분이 확인된 차량을 말합니다.

제6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절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66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 「피보험차량손해」 또는 「차량손해 차대차충돌 한정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67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피보험차량손해」 또는 「차량손해 차대차충돌 한정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1)을 사용하여 실제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2)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외장부품(*3)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부품 공시가격은「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외장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의 외판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범퍼, 보닛(후드), 펜더, 트렁크리드, 도어 및 백도어를 의미합니다.

제68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피보험차량손해」 또는 「차량손해 차대차충돌 한정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OEM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물배상」 제8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및 「피보험차량손해」 제24조(손해액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경미한 손상(*1)에 해당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던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2)이 파손되어 교환수리하는 경우

<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제69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제7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보험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67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보통약관 「피보험차량손해」인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1조(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피보험차량손해」 또는 「차량손해 차대차충돌 한정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으나,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72조(적용 제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 특별약관 제67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67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 제68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67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404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 협회 : 02-3702-8500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 금감원 :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